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대통령령 제36593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93호)이 2026. 8. 18.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2. 동 개정법령은 2026. 8. 18.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93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관계부처, 본부(61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6개 전부서), 6개 지방청(54개 전부서),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



주무관

손익재

연구관

홍정미

식품안전정책 전결 2026. 8. 18.

과장

최종동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정책과-9191

(2026. 8. 18.)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14

팩스번호 043-719-2000

/ sij0301@korea.kr

/ 비공개(6)